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2026. 06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설관리처	박소영	055-922-5271
	한다은	055-922-5274
	전수빈	055-922-5272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이 지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할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 지침의 제정목적(제1조), 적용범위(제2조), 평점기준(제3조), 제출서류(제5조)에 대하여 규정함.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지침번호	제3610호
		시행일	2026.07.01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담당자	박소영, 한다운, 전수빈

제·개정연번	제·개정일자	개정번호	주요내용 및 제·개정사유
제정	2026.06.25	제3610호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평점기준 등

제4조 참여기술인력의 교체 등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실적증명 등

제6조 기간의 산정 등

제7조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등

제8조 기타사항

제9조 재검토기한

부 칙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할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설계용역 특성에 의해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평점기준 등)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 ④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력 평가는 용역업체가 지정한 책임기술자 1인 및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참여기술인력의 교체 등)

-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기술인력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사망 등과 같이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참여 기술인 심사 시 평가점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자로 사전에 LH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② 용역담당부서장은 용역 참여기술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력은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실적증명 등)

-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용역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3]의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일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술인력의 자격 또는 등급, 경력 및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한국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용역업체는 한국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행한 업체의 유사용역수행 실적,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 한국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미신고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발주처로부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산정 등)

- ①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1월은 30일, 1년은 365일로 한다.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기타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등)

- ① 참여기술인력, 업체 실적 관련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는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별표2]에 따른다.
- ② 용역업체 또는 참여기술인력의 경력 및 실적 등의 평가 시 협회에서 확인한 확인서에 참여사업명, 기간 및 담당업무 등의 해당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 ①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H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붙임서류 일체를 [별표3]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5조 제1항에 따른 제출물 중 책자화하여 제출한 서류와 파일로 제출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책자화하여 제출한 것에 따른다.
-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미첨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 점수로 평가한다.
- 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제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6.06.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차 례

[별표1]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7
[1] 평가기준	7
[2] 평가방법	8
[별표2] : 유사용역 인정범위	14
[별표3] : 신청서 작성요령	15
[별표4] : 제출서류 목록표	16
[별지 제1호서식] 표지서식 예시	17
[별지 제2호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8
[1] 종합평가표	19
[2] 항목별 세부 평가	20
1. 참여기술인력 평가	2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23
3. 신용도 평가	2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24
5. 업무중첩도 평가	25
[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27
[별지 제4호서식] 재정상태검토보고서	28
[별지 제5호서식] 참여기술인 조직표, 업무중첩도 제출자료	29

[별표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 점																				
1. 참여기술인력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책임 기술자</th><th>참여 기술자</th><th>계</th></tr> <tr> <td>계</td><td>30</td><td>20</td><td>50</td></tr> <tr> <td>등 급</td><td>5</td><td>5</td><td>10</td></tr> <tr> <td>경 력</td><td>10</td><td>5</td><td>15</td></tr> <tr> <td>실 적</td><td>15</td><td>10</td><td>25</td></tr> </table> - 자격 또는 등급 - 경력 - 실적	구 분	책임 기술자	참여 기술자	계	계	30	20	50	등 급	5	5	10	경 력	10	5	15	실 적	15	10	25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50) 10 15 25
구 분	책임 기술자	참여 기술자	계																				
계	30	20	50																				
등 급	5	5	10																				
경 력	10	5	15																				
실 적	15	10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15)																				
3. 신 용 도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7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 기술개발투자실적 - 교육실적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5) 4 8 3																				
5.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절대평가 절대평가	(10) 6 4																				
합 계			100																				

[2]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력 (50점)

가. 자격 또는 등급 (10점)

등 급	책임기술자 (기술사)	참여기술자(택1)	
		정보통신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특급기술자	5점	5 점	5 점
고급기술자	-	4.5 점	4.5 점
중급기술자	-	3.5 점	3.5 점
초급기술자	-	1 점	1 점

① 참여기술인력의 자격 및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기술부문·전문분야 : 정보통신 한정)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일 기술인력에 대해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②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사이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경력 (15점)

- 책임기술자 (10점)

경 력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미만	6년 이상 8년미만	4년 이상 6년미만	4년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참여기술자 (5점)

경 력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미만	6년 이상 8년미만	4년 이상 6년미만	4년미만
배 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① 참여기술인력 경력은 아래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설계 또는 설계감리 용역 수행 참여기간만 인정하며, 중복하여 작성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인정범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

② 참여기술인력의 경력은 경력확인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또는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중 택1로 평가한다. 단,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이 협회에 미신고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경력확인서의 경우** 참여사업명, 기간, 담당업무 등이 해당 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기재란이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경력증명서의 경우** 사업명, 참여기간, 엔지니어링사업종류,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기술부문, 전문분야 등이 해당 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기재란이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 * 기술부문 : 정보통신, 전문분야 : 정보통신, 엔지니어링활동 : 설계, 감리(설계)에 한정
- ⑤ 참여기술인력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실적 (25점)

유사용역 참여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책임기술자	15	13.5	12	10.5	9
참여기술자	10	9	8	7	6

- ① 참여기술인력의 실적은 아래의 **유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설계 또는 설계감리** 용역수행 참여기간만 인정하며, **중복하여 작성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유사용역 인정범위 :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중 정보통신 기반 설계 및 설계감리용역(ITS, BIS, 스마트폴, 스마트교차로, 방범·방재CCTV,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통신망 설계) **[별표2 참조]**
- ② 참여기술인력의 실적은 경력확인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또는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중 택1로 평가한다. 단,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이 협회에 미신고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경력확인서의 경우** 참여사업명, 기간, 담당업무 등이 해당 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기재란이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경력증명서의 경우** 사업명, 참여기간, 엔지니어링사업종류,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기술부문, 전문분야 등이 해당 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기재란이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 * 기술부문 : 정보통신, 전문분야 : 정보통신, 엔지니어링활동 : 설계, 감리(설계)에 한정
- ⑤ 참여기술인력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점)

수행 실적	250% 이상	200% 이상 2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00% 미만
점 수	15	13.5	12	10.5	9

- ①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업체가 아래의 **유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 준공한 정보통신 설계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정보통신 설계용역의 기성부분 누계실적으로서 해당설계용역비(설계가격) 대비 누계실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유사용역 인정범위 :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중 정보통신 기반 설계 및 설계감리용역(ITS, BIS, 스마트폴, 스마트교차로, 방범·방재CCTV,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통신망 설계 등) [별표2 참조]
 - 예시) 공고일이 '26.01.01일인 경우 '21.01.03~'26.01.01 기간에 발생된 실적금액(준공·기성누계)을 모두 인정
-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수주실적 및 준공실적 확인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처 발급)의 준공·기성누계 실적으로 평가한다.
- ③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한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기재란이 누락되었거나 2개 이상의 업무가 기재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설계용역비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해당설계용역비는 해당용역 설계용역비 중 정보통신설계금액만으로 한다.
- ⑤ 정보통신설계가 포함된 복합공종의 경우 제1항의 유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계 금액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신용도 (10점)

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7점)

① 설계업체(4점)

설계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5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② 참여기술인력(3점)

참여기술인력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국가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90일)마다 0.5점씩 감점한다.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신용평가등급(3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3.0
BBB0, BBB-	A30, A3-	BBB0, BBB-	2.9
BB+, BB0, BB-	B+, B0	BB+, BB0, BB-	2.8
B+, B0, B-	B-	B+, B0, B-	2.7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2.6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 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 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점)

가. 개발실적 (4점)

- ①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통신신기술,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신기술은 최초 지정일, 특허·실용신안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 정보통신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정보통신신기술	100%	80%	-

- ② 제1항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③ 정보통신신기술, 정보통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되 설계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설계업체 명의로 최초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설계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료란에 기재된 유지기간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출원자가 업체와 현 대표자로 구성된 경우는 1인으로 간주된다.
- ④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8점)

- ①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제표상의 경상개발비에 명시된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재정상태건실도 평가기준년도이하 3년) 정보통신 투자실적 및 정보통신부문 총매출액(해당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정보통신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기술개발투자액/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부문 총매출액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②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③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

실적 및 정보통신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3점)

① 참여기술인력이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ICT폴리텍대학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합산 적용(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40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3 점

- 20시간이상 40시간미만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5점

예시) 공고일이 '26.01.01일인 경우 수료일이 '23.01.03~'26.01.01(공고일 포함) 기간 이내이면 인정

② 이 경우 교육시간 산정은 1일을 8시간 기준으로 한다.

5. 업무 중첩도 (10점)

참여기술인력이 입찰공고일 현재 LH에서 수행중인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 중 정보통신설계용역비가 0.3억원 이상이며, 잔여 과업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계약으로 평가함)이 90일 이상이고,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용역금액의 비율이 20%초과하는 용역에 대하여 산정한다.

① 책임기술자(6점), 참여기술자(4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책임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당 0.5점씩 감점

- 참여기술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당 0.1점씩 감점

② 업무중첩도는 한국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용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며, 한국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미신고된 용역에 대해 용역업체는 참여기술자, 계약기간, 금액, 기성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업무수행확인서 또는 발주처 발행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중지중인 용역(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및 최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수행중인 용역 건은 업무중첩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현황과 중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해당용역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업무중첩에 해당되는 용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정된 평점에 누락된 기술자별로 각각 건당 1점을 추가로 감점한다.

※ 용역 건별로 착공신고서에 정보통신분야 참여기술인력 명단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건수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④ 각 업체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사항에 대하여 다른 설계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LH전자조달>심사>심문고)

[별표2] 유사용역 인정범위

유사용역 인정범위

※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중 정보통신 기반 설계 및 설계감리용역(ITS, BIS, 스마트 폴, 스마트교차로, 방범·방재CCTV,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통신망 설계 등)

* 기존 “U-City” 는 “스마트도시” 로 대체 변경함.

**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스마트도시서비스), 제3호(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유사용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목적과 무관한 공동주택, 건축물, 캠퍼스, 항만, 철도, 학교 등의 일반 방범 CCTV 설계용역”
2. “ITS 구성요소 중 일부 (예:단속CCTV, 도로전광판 등)만 포함된 단순 설계과업으로 교통체계 구축 목적이 아닌 경우”
3. “관제센터 연계 기능이 없는 단순 단속용 또는 단일 시설물 보호 목적의 CCTV 설계용역”

[별표3]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 제출서류

가. 제출양식

- 규격 : A4 용지
- 제본 : 좌편철 무선제본 (표지 : 백색아트지)
- 목차구분이 용이하도록 세부 평가항목별 라벨(label) 작성
- 해당하는 경력 및 실적에 형광펜으로 표시

나. 제출서류

- [별표4]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본도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본도서 스캔본(순서 및 내용이 동일한 PDF파일) 1EA
- 업체에서 작성(자기평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엑셀파일 1EA
- 별도 제공되는 업체작성 엑셀파일은 출력하여 평가항목별로 맨 앞쪽에 각각 편철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실격처리 하고, 자격증·경력·실적 서류에 허위 기재한 경우는 실격, 고발,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등)한다.

나. 점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별도로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평가점수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1) 기술자경력증명서, 행정제재여부확인서 및 기술자 보유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하고, 그 외는 필요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시 원본(1부)을 포함한 사본 제출 가능
- 2) 재정상태보고서는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공인회계사(세무사)의 등록증 사본 1부 함께 제출한다.
- 3) 사본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 4) 사업수행능력평가 엑셀파일과 별지서식(hwp)이 중복되는 경우 엑셀파일만 제출가능

[별표4]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제출기준일	제출구분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필수	신 청 자	별지1
입찰참가자격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필수	신 청 자	별지2
- 면 허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공고일	필수 (택1)	관할기관	
- 업체정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개인)사업자등록증명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공고일 공고일 전 3개월부터 공고일	필수 필수 (택1) 필수 선택	관할기관 관할기관 관할기관 신 청 자	
참여감리원	5	종합평가표(자기평가서)	공고일	필수	신 청 자	
- 등 급 - 경력 및 실적	7	기술자 경력확인·증명서(갑지) 자격수첩 사본	공고일 -	필수 (택1) 선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재 직	8	기술자 경력확인·증명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공고일	필수 필수 (택1)	관할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할기관	
유사용역수행실적						
- 5년간 실적		수주 및 준공실적 확인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공고일	필수 선택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주처	별지3
신용도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		(업체)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기술자)경력확인서	공고일	필수 필수 (택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필수	신용정보업자 인정업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신기술 인증서,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 공고일 전 1개월부터	필수	관할기관	
- 기술개발 투자실적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최근 연도 발행 - 공고일 -	필수 필수 필수 (택1)	신 청 자	별지4
- 교육실적		경력확인서 교육훈련 수료증	공고일 -	필수 (택1)	관할기관	
업무중첩도						
- 업무중첩도		(기술자) 경력확인서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 설계용역 중단사실 확인 공문 사본	공고일	필수 (택1)	관할기관	별지5
기 타	16	입찰공고 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

<표지서식 예시>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하

명

○○엔지니어링

용역명 :

20 . .

업 체 명 : ○○엔지니어링

[별지 제2호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용역명 :

위 용역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설계업등록증 사본 등) 1식.
2. 종합평가표 등 PQ서류 1식.

20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작성자 :

E-Mail :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1] 종합평가표

업체명 :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자기평가 평점 (업체)	심사부서 평가 (LH)	비 고
분 야 별	배 점	항 목		배 점			
1. 참여기술인력	50	가. 자격 또는 등급	책임기술자	5			
			참여기술자	5			
		나. 경력	책임기술자	10			
			참여기술자	5			
		다. 실적	책임기술자	15			
			참여기술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최근 5년간 업체실적		15			
3. 신 용 도	10	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		7			
		나.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5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8			
		다. 교육실적		3			
5. 업무중첩도	10	가. 책임기술자		6			
		나. 참여기술자		4			
계							

※ 자기평가평점란은 참가업체에서, 평가란은 LH에서 작성(이하 동일)

상기 종합평가표(자기평가서)는 LH의 「OO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는 교체가 불가능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자 자기평가점수가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2] 항목별 세부 평가

1. 참여기술인력 평가

가. 자격 또는 등급[10점]

1) 책임기술자(5점)

구 분	배 점	평 점	평 가
		특 급(기술사)	
책임기술자	5		

2) 참여기술자(5점)

구 분	배점	평 점				평 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참여기술자	5					

※ 증빙서류

- ①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갑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갑지) 중 택1
- ② 자격수첩 사본(원본대조필)
- ③ 재직증빙서류(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공공기관발급)

나. 경력[15점]

1) 책임기술자(10점)

구 분	배점	년수	평점	평가
책임기술자	10			

2) 참여기술자(5점)

구 분	배점	년수	평점	평가
참여기술자	5			

※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3) 기술자별 경력 세부내용

- 책임기술자 : ○ ○ ○

인정분야	연번 (경력확인서)	참여용역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일수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			설계	시작 일	종료 일	
		계				

- 참여기술자 : ○ ○ ○

인정분야	연번 (경력확인서)	참여용역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일수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			설계	시작 일	종료 일	
		계				

※ 연번은 경력확인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하고, 해당경력 형광펜 표시

※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다. 실적[25점]

1) 책임기술자(15점)

구 분	배점	년수	평 점	평 가
책임기술자	15			

2) 참여기술자(10점)

구 분	배점	년수	평 점	평 가
참여기술자	10			

※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3) 기술자별 참여 실적

- 책임기술자 : ○ ○ ○

인정분야		연번 (경력확인서)	참여용역명	참여 분야	참여기간		일수
유 사 용 역	스마트도시 구축, ITS구축, BIS구축, 방법CCTV 등			(예) 스마트 도시	시 작 일	종 료 일	
			계				

※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 유사용역 범위 : [별표2] 참조

※ 해당실적에 유사용역 종류별로 색구분하여 형광펜 표시

- 참여기술자 : ○ ○ ○

인정분야		연번 (경력확인서)	참여용역명	참여 분야	참여기간		일수
유 사 용 역	스마트도시 구축, ITS구축, BIS구축, 방법CCTV 등			(예) 스마트 도시	시 작 일	종 료 일	
			계				

※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 유사용역 범위 : [별표2] 참조

※ 해당실적에 유사용역 종류별로 색구분하여 형광펜 표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15점]

유사용역 누계실적금액(A)	해당설계 용역비(B) (설계가격)	환산율(%) (A/B)*100	배 점	평 점	평 가
			15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분야		연번 (실적 확인서)	설계용역명	발주처	참여 분야	용역 기간	용역금액 (공동도급 지분구분)	적용 금액
유 사 용 역	스마트도시 구축, ITS구축, BIS구축, 방범CCTV 등				(예) 스마트 도시			
	계							

- ※ 증빙서류 : 설계용역 수주실적확인서 및 준공실적확인서(한국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표준양식) 중 택1
- ※ 유사용역 범위 : [별표2] 참조
- ※ 공통사항 : 최근 5년간 준공한 용역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용역 작성

3. 신용도 평가 [10점]

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등(7점)

구 분	정지기간	배점	감 점	평 점	평 가
설계업체		4			
책임기술자		3			
참여기술자					
계		7			

- ※ 증빙서류
 - ①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 ②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상의 제재내역(책임·참여 기술자)
 - ③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제재내역(책임·참여 기술자)

나. 신용평가등급(3점)

신용평가회사	평가등급	배 점	평 점	평 가
		3		

※ 증빙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15점]

가. 개발실적(4점)

구분	기 술 명	최초출원일자	경과 기간	출원 인수	배점	평점	평가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4		

※ 증빙서류 : 정보통신신기술 지정증서,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과 최근 1월 이내에 관할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제출

나. 기술개발투자실적(8점)

년도	기술개발 투자액(A)	정보통신부분 총매출액(B)	비 율 (A/B)×100	배점	평 점	평 가
계				8		

※ 증빙서류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다. 교육실적(3점)

구 분	이수인원 (A)	평가 대상수(B)	배 점(C)	평 점(업 체) (A/B)×C	평가 (LH)
40시간이상 교육이수			3		
20시간이상 40시간미만 교육이수			1.5		
계					

※ 증빙서류 : ICT폴리텍대학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관련 교육훈련 수료증

5. 업무중첩도 평가[10점]

가. 평 가

구 분	배점	건수	적용점수	평 점	평가
책임기술자	6		-0.5/건		
참여기술자	4		-0.1/건		
계	10				

나. 용역수행 현황

1) 책임기술자 : ○ ○ ○

용역명	용역 기간		잔여기간 (일수)	용역금액	기성금액	잔여금액 (억원)	비고
	시 작 일	종 료 일					용역수행중이거나 계약예정인 모든 용역 표기 및 미적용 사유 명기
계							

2) 참여기술자 : ○ ○ ○

용역명	용역 기간		잔여기간 (일수)	용역금액	기성금액	잔여금액 (억원)	비고
	시 작 일	종 료 일					용역수행중이거나 계약예정인 모든 용역 표기 및 미적용 사유 명기
계							

- ※ 증빙서류: ① 한국한국엔지니어링협회 미신고시 제출서류(별지 제3호서식 발주
부서업무수행확인서 또는 발주처 발행 최초·변경 계약서류 등)
② 설계용역 중단사실 확인자료(관련 공문사본)

[별지 제3호서식]

발주부서 업무수행확인서

☐설 계 ☐설계감리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발주자	회 사 명			법인(사업)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설계업체	회 사 명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용역수행사실내용	①구 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기본+실시설계 ☐ 기타()				
	②용역명					
	③용역개요	○ 정보통신설비 : 간략히 기재				
		○ 내 용 : 간략히 기재				
	④계약내용	○ 형태 : ☐ 단독, ☐ 공동·승계(이행비율: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용역비 : 천원, ○ 기간 : ~				
	⑤계약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기성분				합산기재
		계약잔여분				
	⑥참여정보통신기술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용역기간	비 고
			-			
			-			
			-			
발주자 확인		위와 같이 설계·설계감리용역 수행사실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명: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담당자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 실적 (최근 3년)	$A \div B$ (%)	기술개발투자실적(정보통신부문)		총매출액(정보통신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교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5호서식]

참여기술인 조직표, 업무중첩도 제출자료

동 자료는 「OO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안내」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책임기술자 (기술사)	
성명 :	
기술등급 :	
자격증 :	
회사명 :	

참여기술자	
성명	
회사명	

참여기술자	
성명	
회사명	

참여기술자	
성명	
회사명	
⋮	

참여기술자	
성명	
회사명	

참여기술자	
성명	
회사명	

참여기술자	
성명	
회사명	
⋮	

2.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자(성명, 소속)

번호	참여용역명	참여용역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백만원)	잔여기간 (일)	용역중지일
		계약일	준공일				

☐ 참여기술자(성명, 소속)

번호	참여용역명	참여용역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백만원)	잔여기간 (일)	용역중지일
		계약일	준공일				

☐ 참여기술자(성명, 소속)

번호	참여용역명	참여용역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백만원)	잔여기간 (일)	용역중지일
		계약일	준공일				

☐ 참여기술자(성명, 소속)

번호	참여용역명	참여용역		계약기간 (일)	계약금액 (백만원)	잔여기간 (일)	용역중지일
		계약일	준공일				

20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인)
 연락처 :